

	<h2 style="margin: 0;">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h2>	규정번호	3-4-12
		제정일자	2012. 9. 1.
		개정일자	2024. 9.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본 센터” 라 한다)의 직무,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본 센터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3조(기능) 본 센터는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9.1., 2017.4.1.)

1. 장애학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을 위한 연차별 편의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을 위한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
6.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및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학생과 관련된 사항

## 제 2 장 조 직

제4조(장애학생지원센터장)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장애학생 지원 또는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17.4.1., 2024.9.1.)

② 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장애학생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17.4.1.)

제5조(직원 등) ① 본 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 ② 장애학생지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RA/TA 및 자원봉사자 등을 업무에 임하게 할 수 있다.
- ③ 본 센터의 행정은 교무학생처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7.4.1., 2019.8.1.)

## 제 3 장 특별지원위원회 등

제6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

② 위원회는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 제7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에서 겸한다.  
(개정 2015.5.1., 개정 2017.4.1.)

[제목개정 2015.5.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과제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 ① 본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교 또는 타 기관의 장애인관련 전문가(장애인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장애인고용센터장, 특수교육전공 교수, 재활의학전공 교수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